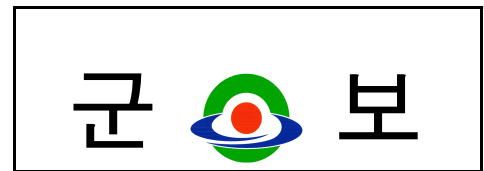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98호 2019. 10. 24.(목)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265호)

공 고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18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65호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군정 주요업무 추진평가 우수부서 분야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조제11호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평가 우수부서 분야는 별도 신청없이 부서별 제출한 실적 증빙자료로 신청을 대신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조제11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평가결과 공문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센티브 지급 기준

1.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중앙단위 평가	부 서	기본금액(군 자체)	추가금액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중앙평가에 따른 별도 시상금
	유공자	특별휴가 2일	
도단위 평가	부 서	기본금액(군 자체)	추가금액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도평가에 따른 별도 시상금
	유공자	특별휴가 2일	
중앙 및 도단위 민간기관 평가	부 서	100만원, 70만원, 5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유공자	특별휴가 2일	

※ 중앙 및 도 주요평가 수상으로 별도 시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군 자체) 기준금액에 별도 시상금을 합한 총 금액 범위내에서 부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평가 등급 없이 다수 기관에 수여되는 기관표창의 경우
평가 단위별로 중간등급(2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동추진 수상 경우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타 부서와 협조한 경우
: 추진부서(70%), 협조부서(30%) 지급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부서와 협조한 경우
: 추진부서(30%), 협조부서(70%) 지급

2. 투자유치 분야

평가단위(투자유치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20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 투자유치액 기준

○ 산업단지 내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상의 총 투자금액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상의 총 분양금액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분양(or 매매)금액 + 건축비

※ 투자유치일 기준

○ 산업단지 내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공문 제출일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작성일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건축 착공신고서 제출일

※ 투자유치 담당직원의 경우 50%를 감하여 포상금 지급함(부서는 해당없음)

3-가. 공모사업 분야

평가단위(국도비 합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7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4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15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5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 최초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내시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함.

※ 미공모사업, 통상적인 공모사업, 군 실링사업 신청 불가

3-나. 신규 현안 사업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150억원 이상 ~	125만원	250만원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6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30억원 이상 ~ 60억 미만	50만원	100만원

※ 신규 국도비 사업이면서 1차년도 사업 추진 후 신청가능
(미 공모사업, 통상적인 공모사업, 군 실링사업 신청가능)

4. 예산절감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10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5. 세입증대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1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5만원	50만원

6. 시책개발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부서	유공자
시책(자체사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가 큰 경우	75만원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25만원	50만원

※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7. 규제개혁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중앙 및 도단위 파급효과가 있는 규제개혁 (제도개선)	유공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8. 언론보도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의로운 공무원 및 우수 공무원으로 언론보도 된 경우	유공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언론보도는 한국 ABC 기준 유료부수 4만부 이상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경우를 말한다.

9. 주민숙원해결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집단·고질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 등	유공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집단민원, 고질민원, 주민숙원사업이 완결된 경우 신청가능함

10.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위원회에서 공감하는 공적	유공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11.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우수부서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부서평가	부서	300만원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읍면평가	부서	300만원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부서·읍면 우수사례 평가	부서	150만원 (최우수)	100만원 (우수)	80만원 (장려)
※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매년 초 수립하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계획을 따른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신규충원이 불가한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타 직렬로 조정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민선7기“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구현을 위한 인력기반 확보

2. 주요내용

- 직렬별 및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1)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계	12건 18명	13건 18명	
7급 4명	○ 방호 1명	○ 행정·위생 1명	사업소
	○ 수의 2명	○ 환경 1명	본청
		○ 행정·위생 1명	본청
	○ 의료기술 1명	○ 보건·간호·의료기술 1명	직속기관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8급 1명	○ 행정·시설 1명	○ 기계운영 1명	본청
9급 13명	○ 행정·시설 1명	○ 시설·녹지 1명	본청
	○ 보건 2명	○ 행정·보건 2명	직속기관
	○ 전기운영 1명	○ 행정 1명	사업소
	○ 열관리운영 1명	○ 행정 1명	본청
	○ 위생·시설관리·사무운영 5명	○ 행정 5명	읍면
	○ 통신운영·전기운영 1명	○ 행정 1명	사업소
	○ 방호·시설관리 1명	○ 방호 1명 (시간선택제)	본청
	○ 행정 1명	○ 행정 1명 (시간선택제)	읍면

※ 현원이 미배치된 현행 정원을 개정하여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확보 및 정원 현행화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shinzx@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 054-650-6837, 팩스 : 054-650-6089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예천군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86	343	11	104	31	197
정무직 계		1	1	-	-	-	-
	정무직	1	1	-	-	-	-
일반직 계		645	338	11	72	27	197
4급 소계		1	1	-	-	-	-
	4급	1	1	-	-	-	-
4급 내지 5급 소계		4	3	-	1	-	-
	4급 내지 행정5급	2	2	-	-	-	-
	4급 내지 행정5급·사회복지5급	1	1	-	-	-	-
	기술4급·보건5급·간호5급·의료기술5급	1	-	-	1	-	-
5급 소계		28	11	3	-	2	12
	행정	4	3	1	-	-	-
	시설	1	1	-	-	-	-
	행정·농업	3	1	-	-	-	2
	행정·시설	3	3	-	-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농업·복지	1	-	-	-	-	1
	행정·농업·시설	9	-	2	-	-	7
	행정·환경·시설	1	1	-	-	-	-
	행정·보건·시설	1	1	-	-	-	-
	행정·시설·방송통신	1	-	-	-	1	-
	행정·농업·복지·수의	1	1	-	-	-	-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농업·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1	-	-	-	1	-
6급	소계	158	83	1	13	6	55
	행정	24	20	1	-	3	-
	세무	2	2	-	-	-	-
	사회복지	3	2	-	-	-	1
	농업	3	3	-	-	-	-
	녹지	3	3	-	-	-	-
	보건진료	5	-	-	5	-	-
	환경	4	4	-	-	-	-
	시설	15	13	-	-	-	2
	행정·세무	3	2	-	-	-	1
	행정·전산	1	1	-	-	-	-
	행정·사회복지	6	3	-	-	-	3
	행정·공업	2	2	-	-	-	-
	행정·농업	4	3	-	-	-	1
	행정·녹지	1	1	-	-	-	-
	행정·보건	2	1	-	1	-	-
	행정·시설	7	7	-	-	-	-
	행정·위생	1	-	-	-	1	-
	행정·학예연구사	1	1	-	-	-	-
	전산·방송통신	1	1	-	-	-	-
	농업·수의	2	2	-	-	-	-
	녹지·시설	1	1	-	-	-	-
	행정·세무·사회복지	2	-	-	-	-	2
	행정·세무·농업	22	-	-	-	-	22
	행정·세무·시설	1	1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	-	-	-
	행정·사회복지·농업	4	-	-	-	-	4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	-	-	-
	행정·공업·환경	1	1	-	-	-	-
	행정·공업·방송통신	1	-	-	-	1	-
	행정·농업·녹지	2	-	-	-	-	2
	행정·농업·수의	2	-	-	-	-	2
	행정·농업·시설	7	-	-	-	-	7
	보건·간호·의료기술	5	-	-	5	-	-
	보건·간호·약무	2	-	-	2	-	-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3	-	-	-	-	3
	행정·세무·농업·환경	2	-	-	-	-	2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	-	-	-	1
	행정·사회복지·농업·간호	2	-	-	-	-	2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운전	2	2	-	-	-	-
		방호·위생·시설관리·사무운영	1	-	-	-	1	-
		기계운영·전기운영·열관리운영	2	2	-	-	-	-
		공업·기계운영·전기운영·열관리운영	1	1	-	-	-	-
	7급 소계		190	114	3	20	11	42
		행정	38	31	2	-	4	1
		세무	4	4	-	-	-	-
		전산	2	2	-	-	-	-
		사회복지	8	2	-	-	-	6
		공업	3	2	-	-	1	-
		농업	4	4	-	-	-	-
		녹지	3	3	-	-	-	-
		보건	1	1	-	-	-	-
		의료기술	1	-	-	1	-	-
		보건진료	5	-	-	5	-	-
		환경	1	1	-	-	-	-
		시설	22	20	-	-	1	1
		행정·세무	5	3	-	-	-	2
		행정·전산	1	1	-	-	-	-
		행정·사회복지	12	4	-	-	-	8
		행정·공업	1	1	-	-	-	-
		행정·농업	8	5	-	-	1	2
		행정·녹지	1	1	-	-	-	-
		행정·시설	11	11	-	-	-	-
		행정·방재안전	1	1	-	-	-	-
		행정·위생	3	2	-	-	1	-
		전산·방송통신	2	2	-	-	-	-
		공업·환경	2	2	-	-	-	-
		공업·방송통신	1	1	-	-	-	-
		농업·수의	1	1	-	-	-	-
		보건·의료기술	2	1	-	1	-	-
		보건·간호	12	-	-	12	-	-
		환경·운전	1	1	-	-	-	-
		행정·세무·농업	19	-	-	-	-	19
		행정·농업·녹지	2	1	-	-	-	1
		행정·농업·수의	2	-	-	-	-	2
		보건·간호·의료기술	1	-	-	1	-	-
		운전	4	3	1	-	-	-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기계운영·열관리운영	2	1	-	-	1	-
	기계운영·전기운영	1	-	-	-	1	-
	행정(임기제)	1	1	-	-	-	-
	행정·녹지(임기제)	1	1	-	-	-	-
	시설관리(임기제)	1	-	-	-	1	-
	8급 소계	150	74	4	24	4	44
	행정	26	22	2	-	2	-
	세무	1	1	-	-	-	-
	전산	1	1	-	-	-	-
	사회복지	10	7	-	-	-	3
	공업	3	1	-	-	2	-
	농업	3	3	-	-	-	-
	녹지	3	3	-	-	-	-
	보건	4	1	-	3	-	-
	보건진료	4	-	-	4	-	-
	환경	2	2	-	-	-	-
	시설	21	13	-	-	-	8
	방송통신	1	-	1	-	-	-
	행정·세무	6	1	-	-	-	5
	행정·전산	1	1	-	-	-	-
	행정·사회복지	7	1	-	-	-	6
	행정·공업	1	1	-	-	-	-
	행정·농업	18	2	-	-	-	16
	행정·시설	7	5	-	-	-	2
	행정·방재안전	1	1	-	-	-	-
	행정·위생	3	1	-	-	-	2
	공업·시설	1	1	-	-	-	-
	보건·간호	9	-	-	9	-	-
	보건·환경	1	1	-	-	-	-
	의료기술·간호	8	-	-	8	-	-
	행정·농업·환경	1	-	-	-	-	1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운전	3	3	-	-	-	-
		기계운영	1	1	-	-	-	-
		시설관리·사무운영	1	-	-	-	-	1
		기계운영·화공운영	1	1	-	-	-	-
		위생·시설관리·사무운영	1	-	1	-	-	-
	9급 소계		111	50	-	13	4	44
		행정	20	8	-	-	3	9
		사회복지	7	5	-	-	-	2
		농업	8	4	-	-	-	4
		보건	8	-	-	8	-	-
		환경	2	2	-	-	-	-
		시설	8	3	-	-	-	5
		방재안전	1	1	-	-	-	-
		행정·세무	15	3	-	-	-	12
		행정·사회복지	6	1	-	-	-	5
		행정·농업	1	1	-	-	-	-
		행정·보건	2	-	-	2	-	-
		행정·시설	3	2	-	-	-	1
		행정·위생	1	-	-	-	-	1
		전산·방송통신	1	1	-	-	-	-
		녹지·시설	2	2	-	-	-	-
		녹지·운전	2	2	-	-	-	-
		행정·세무·환경	2	-	-	-	-	2
		위생	1	-	-	1	-	-
		운전	14	12	-	2	-	-
		전기운영	1	-	-	-	1	-
		시설관리·사무운영	1	1	-	-	-	-
		위생·시설관리·사무운영	3	1	-	-	-	2
		행정(시간선택제)	1	-	-	-	-	1
		방호(시간선택제)	1	1	-	-	-	-
	전문경력관 소계		3	2	-	1	-	-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	-	-	-
별정직 계			-	-	-	-	-	-
	6급 상당(비서)		-	-	-	-	-	-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연구직 계	7	4	-	-	3	-
학예연구사	2	2	-	-	-	-
학예연구사 (임기제)	1	1	-	-	-	-
기록연구사	1	1	-	-	-	-
농업연구사	3	-	-	-	3	-
지도직 계	33	-	-	32	1	-
농촌지도관	3	-	-	3	-	-
농촌지도사	30	-	-	29	1	-